가격 폭락에 폐지줍는 노인들 '울상'

중국 재활용품 수입금지 여파 생계타격 "리어카 가득 채워도 점심값도 안돼"

"새벽 일찍 나와 리어카에 한가득 폐 지를 쌓아 팔아도 점심값도 못벌었어. 전에는 kg당 180원 정도 받았는데 지 금은 50원도 못받아."

중국이 재활용 자원 수입을 전격 금 지하면서 고물상에 되파는 폐지 가격 이 급락하면서 폐지줍는 노인들의 한 숨이 깊어 지고 있다.

18일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지 난해 겨울 까지만 해도 수거된 폐지 는 1kg당 190~200원, 신문지와 책은 230원, 플라스틱은 50원 대에 매입

그러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 치로 인해 이들 가격은 큰 폭으로 하 락, 현재 폐지는 kg당 50원, 신문지와 책은 80원대로 급락했고 플라스틱은

매입 자체가 거부당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구 치평동 한 고물상. 멀리서 노끈으로 느슨하게 묶인 폐

지 더미를 가득 실은 리어카 한대가 휘 청거리며 고물상을 향하고 있었다.

도착후 리어카에서 폐지를 저울로 옮기던 한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새벽부터 반나절에 걸쳐 주은 폐지 40kg를 고물상에 팔아 김 모 할아버지 (81)의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2,000

김할아버지는 "지병을 앓고 있어 약 값을 벌로 거리로 나왔는데 폐지 값이 너무 떨어져 하루종일 일해도 약값을 벌수 없다"며 "약을 안먹을수도 없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



중국이 재활용 자원 수입을 전격 금지시키면서 폐지가격이 급락해 이를 팔아 생활 하는 노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중국의 재활용 자원수입금지 여파로 인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에 빨간

중국으로 수출됐던 미국 등의 폐지 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폐지 가격이 폭 락한 것이 그 이유.

상황이 어렵기는 고물상도 마찬가지 다. 중국 재활용품 수출금지 여파로 폐 지 가격 하락과 함께 폐지 줍는 노인들 이 줄면서 수입도 크게 줄은 탓이다.

또 플라스틱, 유리 등취급 금지 품목 이 늘면서 기존에 선풍기, TV 등 을 분 리해 고철과 구리선 등을 재활용 업체

에 판매 해 냈던 수익또한 인건비 부담 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

치평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플라스틱, 빈 병 등 취급이 안 되는 물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며 "몇개월 전만해도 폐지 를 주워 되파는 어르신들로 북적거렸 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떨어져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지 가격 급락에도 노인들은 폐지 줍기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다는 점이

이 모할머니는 "하루종일 폐지를 모 아팔아도 6,000원짜리 밥한끼도 못사 먹는게 현실이다"며 "폐지 가격이 많 이 떨어져 생활이 어렵지만 다른 밥벌 이 수단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폐지줍는 노 이은총818명으로집계됐다.

/길용현 기자

시민군 문용동 전도사 재조명

유족 "광주 구한 의인"…5·18기록관 유품 기증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폭약관리를 했던 고 문용동 전도사의 유품과 행적을 담은 기록물이 항쟁 38 년 만에 공개됐다.

유품과 기록물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맡긴 유족과 기념사업회는 시민군 일원임에도 군 전문가와 함께 폭약 뇌관을 제거한 문 전도사가 광주 를 지켜낸 숨은 의인이라며 역사 재평 가를 촉구했다.

문용동전도사 순교기념사업회는 고 인이 작성한 수첩과 일기 등 문서자료 24점, 사진 75매, 가방 등 유품 3점을 5·18기록관에 전달하고 기록물위탁 관리협약을 맺었다. 기록물은 5·18 당시 27세 나이로 사망한 문 전도사가 1969년 3월 22일부터 1980년 5월 22 일까지 쓴 일기장 6권 등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해 남겼던 수기도 일부 포 함됐다.

키다가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재진입 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5월 27일 공수부대원 총탄에 맞아 후 펴낸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에 선보일 예정이다.

서 문 전도사를 군이 매수한 부화뇌동 자로 지칭했다.

기념사업회는 이 일로 문 전도사가 계엄군프락치(끄나풀)라는 오명을 뒤 집어썼다고 설명했다. 시민군과 프락 치라는 간극 사이 문 전도사의 행적은 '시민군 폭약관리반'에서 출발한다.

문 전도사는 폭발물을 다뤘던 군 복 무 경험을 토대로 1980년 5월 23일 시 민군 폭약관리반에 참여했다.

폭약관리반은 전남도청 앞 계엄군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이후 시 민들이화순탄광에서가져온다이너마 이트 등 폭발물을 관리했다. 문 전도사 는 당시 도청 지하에 모아둔 폭발물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체를 결심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항쟁 당시 광주에 주둔한 전투교육 사령부에서 전도사로 시무했던 그는 문 전도사는 $5 \cdot 18$ 항쟁 기간 전남도 비밀리에 계엄사와 접촉, 군 전문가를 청 지하에 구축한 시민군 무기고를 지 데리고 폭약 뭉치 뇌관과 수류탄 신관

5 · 18기록관은 문 전도사 기록물을 숨을 거뒀다. 전두환 신군부는 항쟁 직 다음 달 5·18 38주년 기획전시에서 /길용현 기자



봄 김치 나누기 행사

18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18 봄 김치 나누기 행사' 에 참석한 자원봉사 자, 유관기관 참여자 등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담근 1만 포기의 봄 김치는 4,600여명의 소외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골프장. 카트서 떨어진 50대에 2억 배상"

골프장카트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 다고 18일 밝혔다. 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 판사)는 이 모씨(59)와 가족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이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 모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 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 척수에 손상 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씨와 가족은 운전자 김씨가 출발 다.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 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게 손 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광양 목포 일출 05:56 일몰 19:08 3~23 흑산도 8~16 4~23 4~24 4~23 곡 성 4~23 영 광 완 도 7~21 강 진 4~21 장 흥 3~22 4~21 해 남 3~21 고 흥 5~22 6~20 보 성 만조 11:11 23:44 만조 04:27 16:33 여수 간조 05:00 17:1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염전노예 피해자 1심 소송서 패소

"피해자 의사 무관 처벌불원서 때문"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 • 폭행 사 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 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 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 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 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이번 사건에서는 법관 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 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 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 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 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 했다. 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 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 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